

6,470원

2017년
시간급
최저임금

이것만큼은 알자!

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



최저임금은 근로자 **1명 이상인**
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.

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
모두 적용 됩니다.



주휴수당은 **별도로 지급**해야 합니다.



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 이하 **벌금형**에 처해집니다.

최저임금
위반 상담은..

국번없이

1350



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
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
www.minimumwage.go.kr 참고

쉽게 알아보는 “최저임금 계산법”

(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(월~금요일 8시간)인 근로자가 8월 월급 1,475,120원을 받았을 경우)



내가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
임금만을 추려냅니다.

월급명세서(2017년 8월)	
기본급	1,200,000 원
상여금	100,000 원
직무수당	100,000 원
시간외수당	55,120 원
가족수당	20,000 원
급여 계	1,475,120 원

※ 추려내는 기준

1. 매월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
2.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(시간외 수당 등)
3.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	
기본급	1,200,000 원
직무수당	100,000 원
임금 계	1,300,000 원
	추려 낸 임금



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, '17년 고시된
최저임금(시간급 6,470원)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.

시간당임금 환산방법

$$\text{추려낸 임금} \div \text{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}$$

※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인 경우에는 209*시간 적용

판단

$$1,300,000\text{원} \div 209\text{시간}^* \approx 6,220\text{원} < 6,470\text{원}$$

* 209시간 → 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X 52주 + 8시간} ÷ 12월

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
(www.minimumwage.go.kr)





청소년 알바 체크리스트



1

서면 근로계약을
작성했나요?

☒ YES ☐ NO

2

나이를 확인 했나요?

* 만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
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
필요합니다.

☒ YES ☐ NO

3

근로계약서에
근무시간과 급여가
명시 되었나요?

☒ YES ☐ NO

4

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
하기로 하고 개근하였나요?

*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
☒ YES ☐ NO

5

계약서 상 근로시간(소정근로시간) 외에 추가로
일한 시간이 있나요?

* 연장근로에 대해 50% 할증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
☒ YES ☐ NO

6

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를 한 적이 있나요?

*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의
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
6시)에 대해 50%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☒ YES ☐ NO

7

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
겹치게 근무하였나요?

* 각각 할증(50%+50%)된 임금을
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☒ YES ☐ NO

주휴수당이 뭐죠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
1회 이상의 유급휴일(통상 일요일)을 부여하여야
하는데,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
주휴수당이에요. 주 40시간미만 일하는 근로자
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받아야
합니다.

[사례] 시급 7,000원인데 1일 4시간,
1주(5일)간 총 20시간
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일까요?

7,000원 × 20시간 = 140,000원
7,000원 × 4시간 = 28,000원 총 168,000원
→ 주휴수당

연장·야간근로를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·야간 근로를 하였다면
시급의 50%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해요.
(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)

수 당	계산식
연장 근로수당	(시급 + 50%)
야간 근로수당 (오후 10시~익일 오전 6시)	(시급 + 50%)
	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 (시급 + 50% + 50%)

[사례] 시급 7,000원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오후6시~10시까지인
단시간 근로자가 오후6시~자정(0시)까지 일했다면 받아야 할
일급은 얼마일까요?

(7,000원×6시간) + 연장근로수당(7,000원×50%×2시간) +
야간근로수당(7,000원×50%×2시간) = 56,000원